

#### [서식 예] 입양 허가 신청(국내입양)

## 입양 허가 신청(국내입양)

신 청 인 1. 박○○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. 이○○(전화 )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○○ 생년월일 주소

### 신 청 취 지

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원 인

- 1.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.
- 2. 사건본인의 친생부모(또는 후견인)인 ○○○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 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동의하였고,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하 게 되었으니,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첨 부 서 류

1.	신청 관련 사항 목록	1통
2.	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사건본인)	각 1통
3.	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청구인들)	각 1통
4.	입양대상아동확인서	1통
5.	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	1통
6.	양친가정조사서	1통
7.	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	1통
8.	입양동의서	1통

20 . . .

위 신청인 O O (인) O O O (인)

# ○○가정법원{○○지방법원(지원)} 귀중



#### <신청 관련 사항 목록>

구 분	내	용 ( □에 √	표시를	하거나	해당 사항을	기재하십시오.)
1. 양자가 될 사	부(父)	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	아니함		제1항 단서 침	성(「입양특례법」 남조)
람의 친생부모		이름	<u>.</u>		주	소
가 양자 입양에 동 의 하 였 는 지 여부	모(母)				제1항 단서 침	성(「입양특례법」 남조)
		이름	r r		주	소
2. 후견인	이름 (기관명 및 대표자) 주소(소재지) 동의여부(1.친생부모가 동의 할 수 없는 경우)					
3. 보호의뢰 된	기관명					
기관 및 입양알	대표자					
선 기관의 명칭, 주소	주 소					
4. 양자가 될 사	□ 있음	이름	<u>t</u>		주	소
람에 대하여 친						
권을 행사하는						
사람으로서 부 모 이외의 사람	□ 해당	없음				
5. 양자가 될 사 람의 부모의 후	□ 있음	이름			주	소
견인	□ 해당	없음				

#### ☞ 유의사항

- 1. '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'은 「입양특례법」제12의제1항 단서의 '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'입니다.
- 2. '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'은, <u>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(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</u> 출산한 경우)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(민법 제910조) 또는 후견인(민법 제948조) 등입니다.

	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(가정법원 또
제출법원	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
	원 지원)
	1. 수입인지 : 사건본인 1명당 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
비 용	2. 송달료 : 신청인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
	부하고 영수증을 첨부
	< 양자가 될 자격 > (입양특례법 제9조)
	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	1.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
	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
	하 같다)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
	시설(이하 "보장시설"이라 한다)에 보호의뢰한 사람
	2. 부모(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
	을 말한다)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 관에 보호의뢰한 사람
	전에 포모기되면 시험  3.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	수·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
	4.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
	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
	< 양친이 될 자격 등 > (입양특례법 제10조,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)
기 타	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	1.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	2.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
	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	3.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·가정폭력·성폭력·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 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
	4.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
	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	5.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: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
	세 이내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: 25세 이상 45세 미만(다만, 「입양특례법」
	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(이하 "조사기
	관"이라 한다)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(養子)를 건전하게 양육하기
	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	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
	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

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.

